

## 제3절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2. 22 조례 제1877호  
 개정 1996. 10. 18 조례 제2286호  
 1998. 7. 10 조례 제2397호  
 2003. 8. 1 조례 제27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 환경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 한다.
-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

문가를 위촉할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 및 위촉된 관계전문가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심사관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의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조정비용)** 법 제6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 조정, 재정 또는 중거보전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4.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제5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 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별 표]

## 수 수 료(제5조관련)

신청별	조정 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li> <li>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li> <li>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li> </ol>
재정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li> <li>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li> <li>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li> </ol>
참가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li> <li>2. 재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li> </ol>
증거보전신청	5,000원
※ 비고 :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절 충청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정 2000. 9. 22 조례 제2604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현재의 도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군 및 주민의 책무)** ①도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군은 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2.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 ④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장 관리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제4조(관리야생동·식물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중에서 충청북도관리야생동·식물(이하 “관리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및 기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관리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 상 실등으로 인하여 그 지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고시내용에 준하여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
4. 기타 관리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관리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야생동물의 긴급구조)** ①도지사는 농약등 독극물에 중독되었거나, 뒷·울무·차량 등에 의해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보전

**제7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생태계보전지역(이하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환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관리, 보호동·식물 및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5. 법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서 특별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습지·초원지역
- ②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해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하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③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당해 지역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특별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계변화관찰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완충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9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집·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수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의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쥐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하거나 등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0조(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학술조사·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3.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당해 지역중

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중지명령등)**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 ①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 임시 생태계보전지역(이하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에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 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 지역을 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 한다.

**제15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 특별 보호구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완충지역)** 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 제4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

**제18조(자연환경조사)** ①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이를 행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4.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시장·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충청북도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자연휴식지의 운영,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 호소주변, 하천 등 주요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공공시설의 녹화)** ①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수목종류 및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자연형 하천정비)** ①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하 “소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을 정비 할 때에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조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조성, 도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야생동·식물 등 야생생물의 조사·연구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제30조(교육·홍보)**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장 과 태 료 등

**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②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절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2005. 12. 30 조례 제28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 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 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 (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C를 초과하거나 영상 5°C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C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 ①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③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4.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6절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6. 5. 12 조례 제29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 환경보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5.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되며, 기금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환경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3. 충청북도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4. 생태계, 생물종의 보존·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5.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
6.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 결산보고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7절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5. 12 조례 제29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천연가스충전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공급시설(이동식충전시설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 “대폐차”라 함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 “전환”이라 함은 경유사용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천연가스자동차중 다음 각 호와 같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 청소차
-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제4조(적용 대상지역)** 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은 시지역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와 제천시 지역은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시부터 적용 하며 그 외 지역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 및 천연가스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대상기관 및 전환명령)**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당해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2.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보급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의 천연가스자동차 전환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전년도 말까지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 전환명령서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경우에는 전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지역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천연가스 자동차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별·차종별·연식별 보유현황 및 다음연도 대·폐차계획을 당해연도 3월말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작성,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보급계획을 바탕으로 도의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구성·운영)** ①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급 2인 이내
2.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4인 이내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이내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6의2호 규정에 의한 전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8절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06. 12. 29 조례 제29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환경분야의 주요사업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도소속 공무원으로 경제통상국장·복지환경국장·농정국장·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민간인,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안건 및 처리)**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9절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 11. 9 조례 제30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 40조에서 정한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또는 시 · 군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하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소관 국 ·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지원팀장, 환경과장, 수질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 · 응용 지질학 · 수문학 · 환경공학 · 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리지질 · 응용지질 · 수문 · 환경 ·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 · 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지하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0절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1. 4 조례 제30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에 등록(「자동차 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조(정밀검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충청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

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4.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5. 법 제6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6.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7. 법 제85조 제6호에 대한 청문
8. 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9.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검사 독촉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제정 2008. 5. 9 조례 제30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도지사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북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 본청 및 도 소속 행정기관
2. 도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친환경상품구매 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도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은 협회에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 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법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충청북도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짐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한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차이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도지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융자 및 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도지사는 충청북도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①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시장·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2절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12. 26 훈령 제31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괘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효율적인 추진 및 도민, 기업,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의 참여유도
2. 각종 오염행위 감시 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
3. 청풍명월21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 체계 구축
4.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대안건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 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및 부위원장
- 나.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

### 2. 위촉직

- 가. 기업인, 학계, 민간단체 등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자
- 나.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

③ 협의회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협의회장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협의회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처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이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

를 처리한다.

③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하며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추진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 건의
4.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
5. 청풍명월21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체제 구축
6.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위한 교육 홍보
7.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충청북도의 보조금은 반기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한다.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규정)**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의 임용·보수 및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3절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 10. 13 규칙 제255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운용계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9월 10일 까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기금의 사용 신청 및 대상)** ① 기금의 사용 신청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하 "기관 등"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용 신청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원 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조금을 받아 시행중에 있거나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기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 소재 환경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
2. 도에 등록된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3. 환경관련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연구기관
4. 도 및 시·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기금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4조 (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제3조에 따라 기관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사용 대상 기관 등을 선정 한다.

**제5조 (사용기금 정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금 사용대상 기관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별 지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환경보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환경보전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7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기금 지원을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용 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관리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와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4절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운영규정

시행일 1999. 7. 9

개 정 2000. 4. 25

개 정 2001. 7. 4

개 정 2002. 1. 29

개 정 2004. 5. 13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충북의제 21의 명칭은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의제21』(Agenda21)을 근거로 21C를 대비하여 지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할 민간 구심체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이라 함은 충청북도의 도민, 기업, 행정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효율적인 추진 및 도민, 기업,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의 참여유도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대안 건의
3.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
4. 청풍명월21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체제 구축

## 5.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위한 교육 홍보

## 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제5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제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도민 등 지방의제에 관심이 많은 각계 인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1. 당연직

- 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건설문화 위원장 및 간사, 기타 상임위원회 의원 약간명

- 나. 충청북도문화관광환경국장, 균형발전국장

#### 2. 위촉직

- 가. 활동역량과 환경의지가 충만한 각계 영향력 있는 인사

- 나.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2. 위원회의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공사생활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로 본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 제7조(포상) 본 협의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기구)** 협의회에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기초 『의제21』 추진협의회장 회의

**제9조(임원구성 및 임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두고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운영위원장은 겸임할 수 있으며 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운영위원장 1인
4. 운영위원 약간명
5. 감사 2인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의 소집 및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총괄한다.

④ 임원회는 업무협의 추진이 필요시 사전 심의한다.

**제10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고문)** 협의회에 충청북도의회 의장 등 덕망이 있고 환경보전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 제2장 총 회

제12조(총회구성) ①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

제13조(총회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위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장 위 원 회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당연직 위원,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및 회장단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장, 부회장이 겸직 할 수 있다. 단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다만, 결석위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분과위원회)**

- ① 의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홍보분과, 자연환경분과, 생활환경분과, 사회·경제환경분과(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1인을 두며,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충북의제 작성 및 수정보완
  2. 의제 실천계획의 수립
  3. 의제 실천 및 평가
- ④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한다
- 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을 7일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고, 운영위원장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 ⑦ ⑥항에 의거 설치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감사)**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22조(사무소)**

- ① 협의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도청이 소재하는 지역에 둔다.
- ② 사무소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장이 임·면한다.
- ③ 사무국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회 계

**제23조(협의회 회계)**

-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24조(협의회 운영)** 협의회의 운영은 충청북도 보조금, 기업체의 찬조금, 자체조달, 충북도민의 성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5조(세입·세출예산 편성)**

-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①항에 제출된 사업계획(세입·세출포함)에 변동이 있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8조(결산)** 협의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서류 및 장부 비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위원명부 및 이력서

### 3. 규 정

4. 총회 회의록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5.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② 제1항 제1호, 제6호의 서류는 5년, 기타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협의회가 발족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9. 7. 9)
- ②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 4. 25)
- ① (경과규정) 2001년 7월 4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3년 말까지로 한다.  
(2001. 7. 4)
- ① 운영규정 제5조(회원자격및구성) 개정 (2002. 1. 29)
- ① 운영규정 제1조(명칭), 동 제5조(구성), 제6조(위원의 해촉), 제7조(포상), 제9조(임원 구성), 제17조(운영위원회구성 및 소집), 제20조(분과위원회), 제2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9조(서류 및 장부 비치) 개정(2004. 5. 13.)

## 제15절 충청북도 자연보호선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 2001. 9. 14 훈령 제 01121호

일부개정 2008. 1. 1 훈령 제 1256호

일부개정 2008. 7. 1 훈령 제 12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훈령 제49호 「지방자치단체관공서관리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연보호선(충북508호 및 충북509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2. 17, 2001. 9. 14>

**제2조(선박의 명칭)** 선박의 명칭을 자연보호선이라 칭한다.

**제3조(업무)** 자연보호선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호수 내에서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지도·단속
2.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낚시행위등 위반사항 지도·단속
3. 긴급한 수질오염행위 발생시 조치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박관리부서)** 자연보호선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선박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99. 12. 17, 2008. 7. 1>

1. 정책임자 : 환경정책과장 (개정 99. 12. 17, 2008. 7. 1)
2. 부책임자 : 환경지도담당사무관
3. 선박안전관리책임자 : 선장

**제5조(사용허가)** ① 자연보호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에서는 미리 문화관광환경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은 환경과장의 허가를 얻어 자연보호선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4. 4, 1999. 12. 17, 2008.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청호내에서 자연보호선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신원조회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자연보호선의 사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이나 야간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득이 할 경우에는 복지환경국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4. 4, 1999. 12. 17>

**제6조(대리운항의 금지)** ① 선장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자연보호선을 운항할 수 없다.

② 선장이 사고로 자연보호선을 운항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관공선의 선장 을 위촉하여 대리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청호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운항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후 운항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박위치)** 대청호를 운항하는 자연보호선의 정박위치는 청원군 문의면 문의선착장으로 하고, 충주호를 운항하는 자연보호선의 정박위치는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선착장으로 한다. <개정 1997. 4. 4>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선장과 선박의 사용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성실하게 선박을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박의 사용관리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제8조 규정에 의한 안전사고예방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선박 또는 장비를 파손한 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유통 등의 확보)** ① 선장은 긴급시에 대비하여 항상 일정기준량 이상( $200\ell$ )의 유류와 비상안전공구 및 부속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보호선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유류 및 비상안전 물품에 대한 확보상태를 수시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 및 수리)** 선장은 운항전에 자체검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수칙)** 선장 및 승선자(이하 "승선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선박을 항상 자기 유물과 같이 소중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2. 선장은 매일 운항일지를 작성하여 기록 보관한다.
3. 선장은 매월 1회 이상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점검부에 기록보존한다.
4. 선장은 운항승인 없이 임의운항을 하거나 운항구간외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선장은 근무중에 복장을 단정하게 착용하며 품위 있는 태도로 승선인 및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6. 선장 및 승선자는 안전을 위하여 구명등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선장 및 승선자는 선내의 장비 및 비품의 도난과 훼손에 대한 성실한 책임을 지고 항상 보관관리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제13조(금지사항)** 선장 및 승선자는 근무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관공선을 이탈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선박을 대리운항하게 하는 행위
4. 선박열쇠를 선내에 두고 선박을 이탈하는 행위
5. 승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지시된 항로를 임의로 변경 운항하는 행위
7.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8. 운항시간 이외의 운항 및 정원초과 행위
9.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정박행위

**제14조(보고사항)** ① 선장 및 승선자는 근무중이거나 수시로 선박담당부서에 자신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선장 및 승선자는 운항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

로 다음 사항을 선박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3. 피해자 및 가해자 인적사항
4.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기타사항)** 선박내에서는 안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무선전화기 등의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비치서류)** 자연보호선에서는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선박운항승인대장
2. 운항일지
3. 장비 및 비품대장
4. 선박수리(정비)대장
5. 선명록
6. 유류수불대장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2. 9. 4 훈령 제 88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7. 4. 4 훈령 제101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19 훈령 제105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17 훈령 제107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4 훈령 제1121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

(2008. 1. 1 훈령 제125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및분장사무에관한규정)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훈령 제1265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및분장사무에관한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6절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2001. 9. 14 훈령 제01121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민 모두가 충청북도의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행정처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자연및생활환경"이라함은 산과 들, 하천 등 자연적인 것과 도로, 주택 및 각종 시설 등 인위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3. "청결유지"라함은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를 위한 방법 및 주민의 청결의식함양에 대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히 이 루어지도 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청결사안에 대한 조정을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모든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정하는 청결 유지계획에 따라 적극 참여한다.
- ③ 법 제7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제2장 상황실설치·운영

제6조(상황실설치 및 편성) ①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청결유지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② 상황실장은 읍면동장으로, 반장은 읍면에는 총무담당으로 동사무소는 사무장으로 하고 반원은 리동(통)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 9. 14>

제7조(임무) 상황실 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전반을 지휘감독한다.
2. 반장은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3. 반원은 담당리동(통)의 청결유지 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유지이행권고통지 (별지 제1호 서식)등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신고 및 접수처리) ① 청결상황 불량지역에 대한 신고는 도산하 전공무원 및 주민이 지역소재지 상황실에 서면 또는 전화로 행한다.

- ② 신고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생활주변
2. 각종시설주변
3. 도로, 하천, 호소, 유원지, 계곡
4. 농지 및 농로, 공터, 도시공원등

③ 상황실에서는 신고된 상황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접수하여 현지 확인후 별표(신고 및 접수처리요령)와 같이 처리한다.

**제9조(점검)** ① 도에서는 특별한 경우 수시로 운영사항을 점검한다.

②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운영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종합평가, 보조금 지원, 상벌 등에 반영한다.

### 제3장 폐기물수거처리

**제11조(수거조치권고등 처리)** ① 읍면동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접수된 사항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청결유지이행권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이행권고통지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규정 및 법 제 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치명령등)** ① 읍면동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접수한 후 확인하여 규모가 크거나 양이 많은 폐기물로서 계속 방치할 경우 부폐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거나 자원낭비 소지가 있는 폐기물은 그 원인자와 쓰레기물량 등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을 현지확인조사 및 검토 후 법 제 60조제1호 또는 동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대집행 등)**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 및 비용징수 등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장 보 칙

**제14조(협조체제유지)** 시장·군수는 관내 기관단체 및 군부대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공용지역 등지의 청결활동을 한다.

**제15조(홍보)** 시장·군수는 시군정소식지, 반회보, 언론매체( TV, 라디오) 및 마을앰프를 통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 운영전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홍보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1. 9. 14 훈령 제1121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 제17절 충청북도 대청댐주변지역협의회 설치운영규정

개정 2004. 2. 27 훈령 제01162호

**제1조(목적)**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대청댐(이하 “댐”이라 한다) 주변지역 대책을 효율적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대청댐주변지역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96. 3. 8)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개정 96. 3. 8)

1. 댐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과 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사항
3. 댐주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관련군 대책협의회의 건의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도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관련 실국장 및 관련 군의 부군수
2. 도 및 관련 군 의회위원
3. 유관기관, 사회단체,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수질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 상수도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4. 2. 7)

**제6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2회

상·하반기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실무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6. 3. 8 훈령 제98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장

환경관련용어해설



## 환경관련용어해설

### 가시피해

안개, 연무, 스모그, 모래먼지, 황사 등으로 가시거리가 짚아지는 대기현상이다. 이때 가시거리란 지평선의 하늘을 배경으로 시각 5도 이하의 검은 목표를 형태나 윤곽까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 가연성쓰레기

일반적으로 유기물로 되어 있는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로 칭하고 있지만, 소각로의 구조나 분별수집 방법에 따라서 가연쓰레기의 범위는 다르다. 예를 들면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는 생쓰레기는 단순구조의 회분식 소각로에서는 불연성 쓰레기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성능 연소 소각로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라고 말한다.

### 가연성 먼지

생활을 통해서 발생되는 고형 폐기물, 즉 먼지는 배출 상태에서는 가연성 물질이 약 20%이고 불연성 물질이 80%임. 일단 건조한 뒤에는 가연성 물질이 약 67%로 증가함.

### 가와사키병

1967년 일본의 의사 가와사키의 임상 보고로 국제적인 망명으로 통하게 된 질환. 젖먹이 아이가 닷새 정도 고열을 일으킨 후 눈이 충혈되고 입술, 혀, 손발 등에 발진이 나는 증상, 심하면 심장 휴유증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대에만 나타나는 공해병으로 보이는 견해가 많다.

## 가이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영국의 과학자 J.E. 러블록은 그의 저서 『가이아』(Gaia, 1979)에서 대기나 바닷물의 성분 분석을 바탕으로 지구의 생명권은 화학적, 물리적 환경을 생명현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자기 제어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지구 전체가 가이아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견해(가이아 가설)를 펼쳤다. 이 견해는 생태·환경운동의 세계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간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에는 간이 처리, 중급처리, 고급처리의 3종류가 있음. 간이 처리로는 하수중의 미립자, 용해성 물질 및 세균의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중급처리 및 고급 처리의 전처리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 간이 처리시설로서는 침사지, 부사 저지판, 유지 저지판, 스크린 등이 있음.

## 감마( $\gamma$ . gamma)

질량의 단위로서의 1mg의 1/1000. 마이크로그램( $\mu\text{g}$ )은 계량법으로 정해진 단위로서 1mg의 1/1000을 지칭함. 감마라는 단위는 그 별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함. 화학 분석과 정밀한 중량측정에서 사용함.

## 강수량

강수가 모두 지표에 고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수심. 눈이나 우박은 녹아서 물이 된 것으로 치고 측정단위는  $\text{mm}$ .

## 강하먼지

대기의 입자상 물질 중에 지름이  $10\mu\text{m}$  이상으로 무거워 곧장 지상으로 강하하는 것. 비의 작용으로 지표면에 강하하는 것도 강하먼지라 한다. 또한

입자의 지름이  $0.1\sim0.15\mu\text{m}$ 으로 공기 중에서 부유하는 것을 '부유먼지',  $10\mu\text{m}$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부유입자상 물질'이라 한다. 석탄이 주 연료였던 1970년대 초반까지 주요 공업도시의 강하먼지량은 상당히 많았지만, 석유와 청정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급속히 줄어들었다.

### 고정발생원, 점오염원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이동하는 오염원에 대하여 공장, 발전소, 광산, 빌딩(냉난방 시설)등 고정된 오염물질 발생원을 말한다. 고정 발생원에서 배출된 질소 산화물 비율은 전국적으로 자동차 교통량이 많고 공장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낮고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높다.

### 고정오염원(Stationary Sources)

자동차, 기차, 기선, 항공기 등은 이동 오염원임. 이에 대하여 공장, 사업장, 발전소, 광산, 가정 등은 이동하지 않으므로 고정 오염원이라 한다. 이동 오염원은 제각기 공해방지 설비를 해야지만 고정오염원은 집단화하여 공해방지 설비를 해도 무방하다. 또한 산성폐수를 배출하는 공장과 알카리성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서로 폐수를 병합함으로써 공해를 방지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러한 점이 이동 오염원과 다르다.

### 공해수출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의 공해를 퍼트리는 일. 공해문제 때문에 자기 나라에 공장을 세우기 어려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다른 나라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행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공해문제보다는 빈곤의 해결이 앞서므로 공해산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화의 와중에 선진국의 기술·자본을 받아들이며 공해산업을 무분별하게 도입해왔

다. 최근에는 듀폰사의 국내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으나 끝내 저지하지는 못했다.

### 국민환경지표 시계

BOD, ppm, mg/ℓ 등 전문용어 대신에 모든 국민이 환경상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실용적인 대기환경지표 표시 방법으로 0-20은 양호, 20-40은 보통, 40-60은 나쁨, 60-80은 매우 나쁨, 80-100은 위험으로 되어 있다.

### 국지오염(Local Pollution)

광역오염과 비교하여 사용되는 말로서 국소 오염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점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주로 발생되고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오염 현상을 일컫는다 ⇒ 광역오염 ⇒ 환경오염

### 계면활성제(Alkyl Benzene Sulfonate : ABS)

합성세제의 원료로 쓰이며, 물 속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잔류하여 거품을 일으키고, 산소의 공급차단, 하수처리기능 저하등의 원인이 되는 물질(mg/ℓ )

### 광화학스모그(Photo-Chemical Smog)

대기중에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많이 존재할 때 강한 햇빛(자외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인 오존등이 산화력 강한 물질이 기상조건과 지형조건에 의하여 확산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정체되었을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현상을 말하며, 이때 시점을 흐리게 한다.

### 기온역전(Temperature Inversion)

대기 고도에 따라 대기의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고도가 증가해도

대기의 온도가 일정하거나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절대안정층을 말한다. 이러한 대기의 기층을 역전층이라고 하며, 역전층은 공기의 수직운동(상하대류)이 억제되어 대기의 하층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의 상층으로 빨리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온역전시 대기오염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런던 스모그)

### 그린라운드(Green Round)

지구환경이 중요한 현안문제중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킨 것으로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보호 즉,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값싸게 생산된 제품들이 자국에 수입되어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환경상계관세의 부과, GATT체제의 개선, 환경관련 각종 협약 등에 의한 무역규제 등을 총칭하여 GR이라 한다.

### 그린GNP

환경요소를 합산한 국민 경제의 새로운 지표 GNP 등의 대표적 지표가 자원, 오염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입안 및 평가 과정에서 경제와 환경을 통합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COCD)에서 그린 GNP 개발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의 계측 방법이나 기초 정보의 축적 부족 등 문제점 또한 많다. 같은 목적에서 지속적 경제복지 지표(ISEW)와 같이 많은 지표와 산출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 그린벨트

도시주변 또는 일부를 녹지로 지정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도시계획법상 구역제의 하나이다. 이 녹지지대는 還狀(belt)으로 그 도시의 외곽지대를 둘러쌈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교외확장을 미리 막으며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린벨트를 1972년부터 약 62개 시·군에 지정하고 있다.

### 그린피스(Green Peace)

1970년에 알래스카 암치트카 핵실험에 항의하면서 행동을 시작한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로 포경(捕鯨)반대, 해양생태계 보호, 플루토늄 반출 반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녹색소비자운동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기업이 환경을 고려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비, 투자, 홍보 활동을 말한다. 제조, 판매, 유통, 소비의 각 분야에서 환경의 입장에 따라 일일이 점검한다.

### 녹색혁명

녹색혁명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인구증가보다 훨씬 웃도는 농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농업개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개혁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비료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다수확 신품종 곡물의 개발 및 그 사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의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창시한 농업연구기관은 벼나 보리 또는 옥수수 등 농작물의 품종개량을 거듭하여 수확량이 현지 재래종보다 수배가 넘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 1950년 초부터 녹색혁명을 실행한 멕시코는 단위면적당 보리의 수확량이 20년 사이에 세 배로까지 증가하였다.

### 농도규제방식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배출구에서의 농도만으로 규제하는 방식. 배출 수량

이나 배출 가스량을 규제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량 규제가 있음.

### 님비(NIMBY)현상

님비는 “Not In My back Yard”의 약어로서, 직역하면 “우리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뜻으로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을 자기가 사는 집근처에 두지 않으려는 혐오시설 기피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 님토(NIMTO)현상

님토는 “Not in my terms of office”의 약어로 직역하면 “나의 공직 재임 기간중에는 안된다”는 뜻으로 혐오시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을 공직자가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설치하지 않고 임기를 끝마치려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 다운워싱

굴뚝에서의 배출가스의 배출 속도가 아주 느리고, 가스의 온도가 주위의 대기의 온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지표를 향해 내려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다운 워싱(down washing), 또는 다운 드래프트(down draft)이라 하며, 이는 배출가스가 하늘로 올라가 퍼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상 피해야 할 점이다. 한편 배출가스가 지상의 건물이나 산등으로 인하여 마치 기듯이 땅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다운 드래프트라 한다. 이러한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보다 2~3배 정도 높은 굴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이옥신(Dioxin)

염화유기 화합물의 한 종류로 두개의 벤젠고리가 두개의 산소와 결합된

분자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쓰레기 소각처리시 발생하며, 특히 독성이 강하여 유해물질로 거론되어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다. 다염소화된 디벤조-파라-다이옥신(PCDD)은 700°C까지는 열에 안정하며 이 온도를 넘으면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증기압이 낮아져 상온에서는 대기중으로 쉽게 휘발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다이옥신류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은 PVC제품 PCD제품, 살균제와 농약류, 페인트가 칠해진 가구나 페인트로 처리된 목재등을 소각시키지 않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주로 300°C 전후에서 생성되므로 소각시 소각로의 온도를 1200~1300°C로 유지시켜 완전연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담수호

호수는 염분의 농도에 따라 5백ppm을 기준으로 담수호와 염호로 구분되는데, 호수에 녹아 있는 무기염류의 합계가 1ℓ 당 5백ppm 이하인 호수를 담수호라 한다. 화산지역 일부 호수나 석호, 건조지역의 내륙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호수는 담수호다. 담수호는 호수의 밀도가 수온에 지배되므로 전순환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전순환호란 호수 수원의 계절변화 상태에 따라 호수의 전충이 순환하는 것으로 온대호·열대호·한대호로 구분한다. 낮은 위도지방의 열대호 중에는 연중 계속 순환하는 경우도 있다. 담수호에 영양물질이 과다 유입되면 부영양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시화호의 오염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대장균

대장균은 보통 사람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의 일종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호기성균이다. 이 균이 검출되면 분뇨 오염을 나타내는데, 병원성 세균 오염의 지표로 이용된다. 대장균 자체는 비병원성이지만 소화기계 전염성균 보다 저항성이 크므로 살균 후 대장균의 유무는 다른 병원균의 살균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 대장균군

대장균 및 대장균과 극히 유사한 성질을 가진균을 총칭, 사람 및 온혈동물이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의 일종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호기성균으로 병원성 세균오염의 지표.

## 데시벨(decibel : dB)

여러가지 소리의 음압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 음압으로 나누어 이를 상용대수로 취한 후 여기에 20을 곱한 값을 말하는데, 한밤중에 주택가는 30~40dB, 전화벨 소리는 60dB, 변화가의 교통소음은 80dB,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100dB정도이다.

## 도시사막화

대도시에는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지면이 뒤덮여 벗물이 지하에 침투하지 못하고 지표로부터의 수분증발량이 감소하고 여기에 인공적인 배기열이 덧붙여져 기온은 상승하고 습도는 떨어진다. 대기오염까지 가세하면 이끼나 지의류가 소실되고, 착생식물의 사막화가 넓은 지역으로 퍼지게 된다.

## 디스포저

(Disposer)란 싱크대에 붙어 있는 주방오물 분쇄기로서, 음식물 찌꺼기를 전기 모터로 잘게 갈아 생활하수와 함께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내도록 하는 장치이다. 부엌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일일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일부 부유층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며, 물에 떠다니는 물질과 질소, 인 등의 물질을 만들어내 부영양화를 가져와 물을 오염시킨다. 또한 생활하수의 31%만이 하수처리과정을 거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스며든 생활하수는 지하수마저 오염시킨다.

### 라마마(La Mama)

라마마란 스페인어로 “La”는 여성명사에 붙이는 정관사이며 “Mama”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라마마는 엘리뇨나 라니냐와는 달리 태평양상의 북쪽에서 서쪽 그리고 남쪽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말굽형태의 고수온대가 태평양동쪽의 저수온대를 감싸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와 근접한 서태평양상의 수온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용어는 미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william patzert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 라니냐(La Nina)

라니냐는 보통 엘니뇨에 이어 곧바로 나타나는 이상기후로 엘니뇨와 반재 현상을 보이며 스페인어로 “여자아이” 또는 “귀여운 소녀”라는 뜻이다. 적도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바다 중간층이 차가운 해수가 해수면 위로 솟아오르면서 동태평양의 해수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7~9월에 발생한다. 이 경우 남미대륙 상공은 비정상적인 건조상태를 보이게 되고 이에 따라 남미 연안주변은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건조한 대기가 아시아 지역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해수원의 수증기와 만나 구름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폭우나 이상한파가 나타나게 된다.

### 라인강 오염사고

1986년 11월 스위스 바젤에 있는 대규모 의약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의 살충제, 유기인계 농약, 수은화합물등 약 30톤이 라인강으로 유출되어 라인강을 오염시킨 사고

### 립사조약

1971년 2월 2일 이란 랍사르에서 열린 국제습지조약회의에서 성립된 동식물, 물새 보호에 관한 조약.

## 러브캐널(Love canal)사건

러브캐널은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펠스시의 폐기물투기장으로 19세기 후반에 월리엄 러브라고 하는 기업가가 수력발전과 공업계획의 일환으로 굴착된 러브캐널은 1940년대초에서 1950년대까지 부카 케미컬스 앤드플라스틱사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투기장으로 이용되었는데, 발암성분이 대부분인 4,300톤의 폐기물이 그곳에 버려졌다.

1953년 부카 케미컬스사는 투기된 화학물질에 의한 일체의 피해 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지역 교육위원회에 양도하였고, 곧바로 그곳에 주택단지와 학교가 건립되었다. 그 후 1977년 이 지역에서 매립한 폐기물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되었는데, 조사결과 투기장 주변의 대기, 토양 및 물이 유독한 발암성 화학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1978년 4월 뉴욕주 보건위생국은 240여 가구를 이주시켰으며, 이 폐기물 투기장은 출입이 금지되고 국가 긴급재해구역으로 지정되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화학물질 오염에 의한 국가긴급사태가 선포되었다.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독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이 지역의 침출수가 600만명의 상수원인 나이아가라천에 직접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런던형 스모그(Londan type Smog)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에 거쳐 영국의 런던에 짙은 스모그가 발생하여 기온의 역전층, 분지적인 지역특성에 의해 상공에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가정난방에 사용한 석탄연소로 아황산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스모그에 의한 사망자수는 예년보다 약 4,000명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인은 기관지염, 심장병등이 대부분이고 특히 만성호흡기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사망이 많았다.

## 로스엔젤레스형 스모그(Los Angeles type Smog)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바람이 약하고 역전층이 일어나기 쉬운 기상, 강한 태양광선 등의 조건 아래 자동차 의존율이 높아 도시에서 발생하는 광화학 스모그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하여 로스엔젤레스형 스모그라 불리우게 되었다. 특이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도시 대기오염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링겔만 매연 농도표

이 표의 사용 방법은 관측자의 전방 16M에 이표를 수직으로 세워서 굴뚝 출구에서 30에서 40센티미터 위치의 매연이 태양 광선을 차단하는 비율과 이 표를 비교한다. 매연의 색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광선이 매연에 흡수가 되는 상황을 비교한다. 이 표에 의한 매연 농도의 측정은 오차가 생기기 쉬우나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 레벨(level)

음향, 진동 관계의 용어로 사용됨. 특정 기준량으로 그 양을 제한한 비율을 데시벨로 표시한 값임. 소음 레벨, 음압 레벨, 음의 강도 레벨, 파워 레벨, 음의 크기 레벨, 레벨 차, 진동 레벨 등의 용어가 있음.

## 리우선언

『지구현장』이라고도 일컫는 리우 선언은 27개 조의 원칙으로 성립된다. 전문의 요지는 “국제 환경개발회의는 각 나라와 사회의 새롭고 공평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며, 모든 인간을 위한 이익을 존중하고, 또한 지구적 규모의 환경 및 개발 시스템의 일체성을 보존 유지하는 국제적 합의를 향하여 활동하며, 인류의 집인 지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되어있다.

## 바나나(BANANA) 현상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Anybody.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 쓰레기 매립지나 핵폐기물 처리장등 각종 환경오염시설물 등은 자기 지역내에는 절대 설치불가라는 지역이기주의의 한 현상으로 님비(NIMBY)라는 용어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 바이러스

생물의 세포, 세균에 기생하여 숙주의 단백질합성이나 에너지를 이용해 자기 증식을 하는 생물. 단 모든 바이러스가 병원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동물 바이러스에 의한 병에는 인플루엔자 일본 뇌염, 흥역, 백일해, 천연두, 소아마비, 트라코마, 광견병, 뉴캐슬병(닭) 등이 있다.

## 반감기

한 물질의 방사능 강도가 반으로 줄어들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를테면 요소 131의 반감기는 8일이므로 이 방사능은 8일 만에 반, 16일만에 4분의 1, 24일 만에 8분의 1이 된다. 이러한 물리적 반감기(T<sub>b</sub>)에 대해 생물이 체내에 섭취된 방사능을 2분의 1 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물학적 반감기(T<sub>b</sub>)라고 하며, 그 길고 짧음은 화학적 특질○에 따라 다양하다.

## 부영양화

호수, 연안지역, 하천 등의 정체된 수역에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또는 비료나 유기물질 등에 의해서 물 속에 영양염류(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유기질소화합물, 무기인산염, 유기인산염, 규산염 등이 있다), 특히 인산염이 많을 경우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잉 증식하여 물 속에 있는 산소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수질이 나빠지며 결국에는 산소결핍으로 어패류가 죽기까지 하는 현상을 부영양화라 한다. 강이나 바다, 호수 등에 유기물이 들어오면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며, 분해산물은 자연 생태계의 물질순환의 사이클(생산-주로 녹색 식물에 의한 광합성, 소비-동물, 분해-박테리아) 내에서 교환된다. 이 사이클이 순조로우면 자연은 균형이 잡혀, 소위 자연의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 된다.

### 빈영양호

호소가 생성될 당시에는 수심도 깊고 물도 맑으며,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양과 퇴적량도 적어서 생물이 거의 생식하지 않는데, 이러한 상태의 호소를 빈영양호라 한다.

### 비이온 계면활성제

합성세제의 일종으로 문자 중에 이온화된 원자단이 없으므로 수용액이 되어도 풀려서 떨어지지 않는 계면 활성제를 말한다. 이것은 거품을 잘일으키고, 세정능력이 뛰어나며 내산성, 내경수성, 내염화성이 있다. 섬유공업, 식료품의 유화, 화장품 제조, 연고 제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배수 중에 흘러 들어온 비 이온 계면활성제는 다른 합성세제와 마찬가지로 물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 빌딩증후군

실내의 건조하고 혼탁한 공기로 인해 두통이나 현기증이 난다거나 눈과 피부가 가렵고 따끔거리는 현상을 “빌딩 증후군”이라 한다. 이증상은 냉·난방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안팎을 차단하는 최신식 건물들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신선한 바깥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다가 담배연기, 건축자재, 카펫 등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이 떠다니며 실내공기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산성비(Acid Rain)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에서 배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산성대기 오염물질이 공기중의 운무와 결합 황산 또는 질산이 되어 초기 강우시 PH5.6 이하의 산성을 띠는 비를 말하며, 산림피해, 농작물피해, 토양오염 및 각종 건축구조물의 재료를 부식시킨다.

## 산성안개

산성의 대기오염물질이 빗물이 아닌 대기 중에 부유하는 안개에 스며든 것. 공장이나 자동차로부터 배출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은 초산염이나 황산염의 산성입자로 하강한다. 이 입자가 빗물에 스며든 것이 산성비며, 빗물에 스며들지 않은 채 입자상태로 강하하는 것을 강선강하물이라 한다. 산성안개는 산성비보다 장시간 공기중에 머무르므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흡수하여 산성도가 높다.

## 산화지

안정지의 일종으로서, 하수 중의 유기물을 자연의 정화작용에 의해 세균이나 조류의 작용을 받아서 안정화하기 위한 못을 말한다. 유기물은 호기성균의 작용을 받아서 탄산가스나 암모니아로 분해되어 균류나 조류가 증식하고, 조류의 광합성과 수면에서의 폭기에 의해서 산소가 보급되어 호기성 상태가 유지된다.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안정화에 수주일이 걸리지만, 유지관리는 용이하다.

## 색도

물의 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물속에 백금이 1ppm 들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색을 1도로 표시함. 색도 표준용액은 염화백금산 칼륨 2.49g 및 결정 염화코발트 2.00g을 염산 200㎖에 용해시켜 1ℓ로 한 것을 1,000도로 하여 조제하고, 이 표준액을 희석, 검수의 색과 비교함.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Bidchemical Oxygen Demend)

물속에 사는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성 오염물질을 탄산가스와 물로 안정화하는데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단위는 통상  $\text{mg}/\ell$ 를 사용한다. BOD는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성 오염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간접지표로 BOD가 높으면 수중에 유기물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소세균, 남조, 질소고정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은 탄소원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폴리에스테르를 생합성하여 체내에 축적된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미생물 중에는 최적 조건에서 배양하면 대량의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는 것이 있다. 이 폴리에스테를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이나 실, 필름, 등을 만들 수 있다.

## 생태계

생물군집(식물군집과 동물군집) 및 그것들을 둘러싼 자연계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요인이 총합된 물질(Transely, 1953).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및 환원자로서 구성되며, 유기물과 무기물 사이에는 물질 대사계가 성립되어 있음.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육지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으로 구별되고, 생물군집 군을 기준으로 하여 삼림생태계, 조류생태계 등으로 구별됨. 생태계의 일부가 인위적으로 변경 또는 파괴되면, 그 생태계 전체의 물질대사 회로가 큰 영향을 받게됨. 먹이를 모으던 시대의 인간은 자연환경의 공생자였지만,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자연의 생태계는 파괴되어, 서로 다른 생태계가 계속 생기고 있음.

## 선오염원

배출원을 물리적 배출형태로 구분하면 크게 고정배출원과 이동배출원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다시 점오염원·선오염원·면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선오염원은 이동배출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자동차(고속도로), 기차(철도), 비행기, 선박 등과 같이 선으로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세계환경의 날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의 결의를 바탕으로 같은해 12월의 제27회 국제연합 총회가 환경에 관한 인식을 되짚어보는 날로 설정한 6월 5일은 국제연합인간 환경회의가 개최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수소에너지

용액의 산성, 알カリ성을 나타내는 척도,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그램이온(수소이온농도)은 1보다 훨씬 작은 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에 대한 상용로그를 수소이온 지수로 나타내 사용한다. 이것이 pH다. pH는 0에서 14까지 있으며, 용액이 산성으면 pH는 7보다 작고, 알칼리성이면 7보다 크다. 산성비는 pH 5.6이하의 비를 말한다.

## 수소이온농도(pH)

용액의 산성,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척도.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그램이온(수소이온농도)은 1보다 훨씬 작은 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소 이온농도의 역수에 대한 상용로그를 수소이온 지수로 나타내 사용한다. 이것이 pH다. pH는 0에서 14까지 있으며, 용액이 산성으면 pH는 7보다 작고, 알칼리성이면 7보다 크다. 산성비는 pH 5.6이하의 비를 말한다.

## 수은중독

수은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용해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장기나 신경계에 고도로 축적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계속 흡입 돼서 몸안에 축적되어 총 수은량이 30ppm 이상이 되면 수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미나마타시의 환자중에서 200ppm인 사람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수은의 축적에 의한 중독을 일으키게 되면, 만성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해, 운동장애, 언

어장애, 난청, 심하면 사지가 마비되어 죽음에까지 이르른다. 뿐만 아니라 산모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태아가 이와 같은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지체 부자유자로 태어나기도 한다.

###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5월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부담금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의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먹는 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에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세입이 되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관리 집행한다.

### 스모그

smoke(연기)와 Fog(안개)의 합성어, 연기는 매연을 말하고 안개는 기상현상으로서의 안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매연과 안개의 공존에 의한 대기 오염을 가리킴. 로소엔젤리스형 스모그, 런던형 스모그, 런던 살인형 스모그 등이 있음. 공장에서의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이 된 뮤즈(meuse)계곡 사건이나 도노라(donora)사건이 있음. 가정난방의 배기가스가 주요원인이 된 스모그에는 런던형의 스모그가 있음. 일본 동경의 스모그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의 배기가스에 태양 광선이 작용하여 옥시던트로 된 것임. 런던형 스모그는 1차 오염에 의한 것이지만, 동경의 스모그는 2차 오염에 의한 것임.

### 슬러지

수중의 부유물이 침전하여 진흙상으로 된 것. 오니(汚泥)라고도 함. 슬러지에는 다량의 물이 함유되어 있어 취급이 어려우므로 모래여과, 필터프러스, 진공여과기 등으로 처리하여 보다 수분이 적은 슬러지 케이크로 만듦. 이케이크

는 묻거나 콘크리트 굳힘을 하거나 소각시키거나 바다에 버려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재이용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묻어버리는 방법에는 2차 오염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며, 소각이 곤란한 것도 있고, 재이용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 그 처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함.

### 습식공기산화

슬러지를 수중에서 고온과 고압으로 산화시키는 방법이다. 0.64cm 이하로 슬러지를 분쇄시킨 후 1만btm(1천~1천8백psi)의 압력으로 40~60분간 산화시킨다. 산화되는 정도는 운전온도, 압력, 체류시간 및 공기량, 주입 슬러지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 습지

습지는 호수에서 육지로 전환하는 생태적 천이단계의 중간단계로서 두 환경의 특성을 공유하며 각종 물질의 전환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생물이 다양하게 출연한다.

### 아젠다21

리우선언이 지구 환경보존을 위한 충론적인 현장이었다면 아젠다21은 지구보전을 위한 규범을 각론에 들어가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이다.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환경 및 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된다. 아젠다21의 구성은 4개의 장으로 성립되어 있다. 1. 사회·경제적 측면 2. 개발자원의 보호와 관리 3. 주요한 그룹의 역할 4. 실시수단

### 암모니아성 질소

유기성 질소는 생체나 분뇨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지만 이것이 분해되어 무기호흡할 경우 산화가 일어나는 초기의 것으로서 질소를 발생한다. 따라서 물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함유할 때는 그 물은 비교적 오래 되지

않은 분뇨나 하수, 공장폐수 오염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NH<sub>3</sub>-N으로 표기한다.

###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에 압력을 가하여 -162℃로 냉각, 액화한 것. 가격이 낮고 해상 수송도 가능하다. 21세기에는 그 수요가 현재의 3배가 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어 당면한 지구온난화 대책용 에너지로 유망시 되고 있다.

### 액화석유가스(LPG)

석유의 생산이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유가스 중에서 프로판, 부탄 등을 회수하여 압력을 가지고 액화한 것. 도시가스의 원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운반이 용이하여 프로판 가스로 가정에 보급되고 있다. 용적당 발열량은 천연가스보다 낮고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누수시에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 엘리뇨(EL-Nino)

엘리뇨는 본래 에콰도르에서부터 페루에 걸쳐있는 연안해역의 이름인데, 9월에서 다음해 3월사이,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여 잔멸치류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연관시켜 스페인어로 “아기예수” 또는 “사내아이”란 뜻의 엘리뇨란 이름이 붙은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엘리뇨 현상이란 계절적인 것이 아니라 열대 동태 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 열대야

야간의 최저 기온이 25℃ 이상의 무더운 밤을 열대야라고 한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장,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나오는 폐열로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마다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 열섬현상(Heat island)

도시의 지면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난방, 공장, 자동차로부터의 인공열등 대기오염물질이 무제한 방출됨에 따라 습도가 떨어지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도시와 주변부를 포함한 지역에 관한 등온선을 그려보면, 도심일수록 기온이 높고, 기온이 높은 부분이 섬과 같은 형태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염화불화탄소(CFC : Chloro Fluoro Carbon)

일명 프레온가스라 불리는 염화불화탄소(CFC)는 CCL2F2, CFCL3 등이 있는데, 구조가 C-F결합이기 때문에 열적, 화학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이것의 용도는 냉매, 에어로롤, 분사제, 우레탄 발포제, 정밀기기의 세정제 등 폭넓게 쓰이고 있다.

염화불화탄소가 성층권에 진입하면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염소가 방출되는 데 이 염소원자가 오존분자를 파괴시키며, 염소원자 1개가 오존분자 10,000 개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영양염류

암모니아, 아초산, 초산 등 질소 화합물과 인산염은 식물의 에너지 공급과 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이다. 이들을 영양염류라고 한다. 이러한 물질이 수중에 대량으로 공급되면 특정한 플랑크톤의 증식을 가져오고 적조 현상의 원인이 된다.

### 예치금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물건 중 회수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이나 용기에 생산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생산업자가 이를 회수하

여 처리하였을 때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제품의 제조·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기업체가 폐기물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경제적 유인책의 하나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 오염방지와 자원절약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종이팩, 금속캔과 같이 회수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는 음식료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할 수온전지, 처리가 어려운 타이어, 불법처리 될 경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윤활유, 부피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 처리가 어려운 가전제품 등 크게 다섯 종류로 나뉜다. 예치금은 품목과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다.

## 오니

강이나 바다, 호수 등의 물 밑에 퇴적되어 있는 부드러운 흙을 말한다. 특히 도시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등의 유기성·무기성 오니가 다양으로 퇴적되면 수중의 산소를 소비하여 어패류를 오염시키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폐수처리에서는 수중의 키는 등 수침전되어 있을 때 오니 물질이라고 하고 슬러지라고도 한다. 생물학적 처리나 응집침전 등을 통하여 오니X수침전을 촉진시켜 처리한다. 오니를 분리하는것이 폐수처리작업에서 중요한 공정의 하나이다.

## 오염부하량

환경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총량으로 도시하수, 공장폐수등의 방류량과 그 수질농도에 의해 계산된다. 오염부하량은 주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등의 1일당 톤수로 표시한다.

## 오염자동감시장치(TMS : Telemetry Monitoring System)

측정장비와 감시장비를 On Line 연결하여 측정된 자료를 분석 및 검색할 수 있는 장치

## 오염자부담원칙

기업이나 개발자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환경파괴 및 건강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견해, 원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창한 것이다. 공해 방지를 위한 비용분담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면 공정한 무역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현재는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 오존층(Ozone layer)

지상으로부터 높이 15~50km 부근의 대기중에는 지표면 부근의 대기보다 오존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오존층이라 한다. 오존층은 해로운 단파장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상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므로 생물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 온실가스 배출거래량

이산화탄소( CO<sub>2</sub> ) 배출권시장에서는 과학적 의견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지구전체의 CO<sub>2</sub> 배출총량을 배출권으로 나누어 시장 구성원에게 초기 할당하고, 각 구성원은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통해 배출할당을 조정한다. 할당대상을 나라별로 하는가, 지역별로 하는가, 한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의 할당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 특히 초기 할당 방법이 중요한데 국제적 배출권시장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배분하자는 제안이 많다. 현재의 배출실적에 대응해서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은 연뜻 보기에도 배출책임에 대응한 공평한 CO<sub>2</sub> 억제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실태는 현상 인정이며,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방해하고 에너지나 원자력 개발등을 통하여 상당한 CO<sub>2</sub> 억제를 실현하고 있는 일본 등에 불공평하게 된다.

##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

탄산가스, 메탄, 염화불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미량가스가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흡수하여 온실의 유리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게되어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지구의 온실효과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는 생태계의 변화, 삼림의 고사, 농지의 건조, 해수면의 상승, 기온 이상으로 인한 대규모 태풍 발생등이 있다.

## 용존산소(DO : Dissolved Oxygen)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으로 단위는  $\text{mg}/\ell$ 로 표시하고 깨끗한 물에는  $7\sim14\text{mg}/\ell$ 의 용존산소가 있으며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5\text{mg}/\ell$  이상의 용존 산소가 필요함.

## 월경공해(越境公害)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해, 대표적인 월경공해로는 산성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오염, 인도네시아의 산불 등이 있다.

## 이동발생원

공장, 발전소, 광산, 가정 등 고정된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하여 가솔린이나 중유를 연료로 쓰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을 이동발생원이라고 한다. 이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각지에 오염을 퍼뜨린다.

## 이차오염

오염물질이 대기나 물속에서 다른 유해물질로 변화하는 것으로 예컨대 광화학 스모그의 옥시단트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인산화질소 등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2차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예이다.

## 이따이이따이병(Itai-itai Disease)

일본의 도야마현 신통천 하류지역에서는 아연 제련공장에서 버린 광물의

찌꺼기에서 유독한 카드뮴이 빗물에 의해 용해되어 하천에 유입되었고, 이 오염된 하천수를 하류 농경지에서 수십 년간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카드뮴이 농토에 흡수되어 농축되었고, 농작물, 특히 쌀에 흡수되어 이것을 오래 섭취하였던 지역주민 중 노년 여성들이 심한 요통, 근육통, 관절통을 앓게 되었으며, 병적 골절, 전신 위축, 폐기종 등이 발생하여 약 3백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자외선

태양은 가시광선 이외에 비교적 짜증이 짧은 자외선 및 X선, 파장이 긴 적외선이나 전파를 발사한다. 파장이 3백20~4백nm(나노미터, 10-9M)인 자외선UV-A는 성층권의 오존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지상으로 그대로 내려오지만, 생물체에 대한 영향은 무시해도 된다. 2백80~3백20nm인 UV-B, UV-C는 생물에게 유해하다. UV-B는 성층권오존이 감소하면 지상에 도달하는 양이 증가한다.

## 자원다소비형 산업

펄프 제지업, 화학공업, 시멘트 제조업, 철광업 네 업종을 가리킨다. 자원다소비형 산업의 특징은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 자정작용(Self-purification)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물이 흐르는 동안에 확산, 희석, 화합, 침전, 산화, 응집 및 미생물에 의해서 스스로 정화되는 현상으로 보통 BOD 4~5mg/l 이하여야 하나, 유기성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다량 유입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그 이상이 되면 자정능력을 잃게 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된다.

## 저유황유

유황성분이 1% 이하인 원유를 말하며 미국이나 아프리카산에 저유황유가 많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지방의 원유는 유황 함유량이 많다. 유황 함유량이 많은 기름이 연소되면 아황산가스 등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의 큰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대도시와 공업단지에서는 저유황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적조

하구나 만과 같은 정체된 해역에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 해수중의 플랑크톤이 이상 번식하게 되어 해수의 색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어떤 해역에 적조현상이 발생되면 적조생물이 호흡에 의해 수중의 용존산소가 다량 소비되어 다른 생물의 어렵고 적조생물이 아가미에 부착하여 어폐류를 질식시키며 적조생물중 강한 독성을 갖는 편모조류(algae)가 독소를 분비하여 어폐류를 폐사시키기도 한다.

## 전기자동차

엔진 대신에 모터(전동기)로 달리는 자동차. 축전지에 저장한 전기로 모터를 돌린다. 모터는 엔진에 비해 소형이고, 피스톤 운동 부분이 없어 소음이 적으며 움직임이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다. 배기가스가 전혀 없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1998년에 주에서 판매되는 새 차의 2%를 전기자동차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중이다. 전기자동차를 대중화시키려면 시판가격을 낮추고, 속도 및 마력, 주행거리를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다.

## 점오염원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원이 고정된 경우를 말하며 비점 오염원의 상대적 개념이다. 점오염원은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 배출지점은 물론 오염경로나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 중금속

비중이 4이상 되는 금속의 총칭. 수은, 카드뮴, 납, 동, 크롬, 망간, 바나듐, 금, 은, 백금, 철 등. 이러한 중금속은 강한 독성을 가진 것이 많다. 또한 배수나 매연에 포함된 중금속의 경우 그 양이 미량일지라도 축적되어 식물연쇄 등의 경로를 거쳐 인체에 해를 끼친다. 이를 미량 중금속 공해라 한다. 카드뮴, 수은이 대표적인 예다.

## 중수도(中水道)

빌딩, 주택단지 등에서 하수를 처리하여 음료수이외의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것으로써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인데, 중수도는 상수도의 공급력이 한계에 이르렀거나 하수도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할 때 상수의 소비와 하수의 배출을 억제하는데에 유용하게 쓰인다.

## 지구의 날(Earth Day)

지구의 날이 시작된 것은 1970년 4월 22일 당시 스탠포드 대학의 자치원장이던 데니스 헤이즈가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파괴로부터 지구와 지역을 지키고자 시작한 운동이다.

## 지역난방

일정지역내 아파트 및 다수의 건물의 개별적인 열생산시설(보일러 등)을 갖추지 않고 집중화된 대규모 열원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배관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 지구온난화현상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흡수해서 다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점차 늘어나자 점점 더 적외선을 많이 흡수해 가득게 되고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 지표종·지표생물

특정지역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하는 생물(주로 미생물이나 식물). 예를 들면 그리스우드가 있는 곳은 염기성 토양임을 알 수 있고, 아끼류 있는 곳은 산성토양임을 나타난다. 실지렁이가 사는 고여 있는 물은 산소가 부족하여 마실 수 없음을 나타낸다. 특정 식물종의 존재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종이 잘 자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원래 지표식물이란 입지의 영양상태도, 산성도, 건습도 등과 같은 환경조건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을 가리킨다.

### 청정연료

청정연료란 LNG, LPG, 경유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말한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용 시설·난방 등에 쓰이는 연료 가운데 경유는 병커C유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10분의 1수준이며 LNG, LPG는 1백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

### 총량규제

일정 지역 내의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환경보전상 허용가능한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 등에 대해 오염물질의 허용배출량을 배분하고, 이양을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해진 규제방식이다. 원래 이들 법률에서는 개개 공장 등의 배출 기준(또는 배수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제로는 지역이 바라는 환경상의 조건, 즉 환경기준을 유지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그 해결수단으로서 총량규제를 행하게 되었다. 공장 또는 사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오염상태가 현저해져 환경기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지 농도만의 규제가 아니고 오염물질의 배

출 총량을 규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량의 물에 의해서 희석시켜 규제농도 이하로 해서 배출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다.

## 탁 도

물위에 떠있는 부유물질의 정도에 따라 물의 맑고 탁한 정도를 측정해낸 값. 탁도의 표준액에는 카올린을 사용하고 있으나 천연의 탁도는 꼭 이와 같지는 않다. 저수지의 밑바닥이나 홍수시의 적탁등 입도 조성의 변화에 의하며 입자가 큰 것이 혼입, 미립자의 집합등 다양하므로 입도 조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탁도는 정수 방법 선정, 약품 처리 시설 설계 처리 조작을 위한 기본적 항목이기도 하다.

## 클라크스 수(Clakes No)

지구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토양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비(산소 50%, 규소25%,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비소, 카드뮴등)를 말한다.

## 트리할로메탄(THM : Trihalomethane)

메탄의 수소원소 4개중 3개가 할로겐 원소로 바뀐 화합물질로 10종류가 존재한다. 이를 발암성 또는 변이원성 물질로써 물속의 유기물질이 생물화학적 반응을 거쳐 정수처리과정에서 사용된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며 휘발성이므로 끓이면 대부분 제거된다.

## 프레온가스

프레온 가스란 냉방 장치나 냉동장치, 스프레이의 분사제 등에 사용되는데 이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한다. 오존층이란 대기층 위쪽 약25km상공에 오존이라는 가스층을 말하며, 이 오존층은 사정없이 내리쬐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인간이나 동식물들이 성장하는데 알맞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오존층을 끄레온가스가 파괴하면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없다. 이 자외선은 백내장과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식물의 성장 발육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

1985년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서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있음을 발견했다. 이 구멍은 미국 대륙만큼이나 크다고 한다. 이대로 나가다간 오존층의 구멍이 더욱더 커져서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생활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해나가야 하겠다.

### 피씨비(PCB : Poly Chorinated Biphenyl)

염소와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로서 절연유, 열매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분해가 어렵고 잔류성이 높고 반성이며 독성이 강한 오염물질이다.

### 피피엠(PPM), 피피비(PPB)

피피엠은 parts per million의 약칭으로 백만분의 일( $1/1,000,000$ )을 나타내며 무게분율(W/W ppm)과 부피분율(V/V ppm)이 있다.  $1\text{mg}/\ell$ 를  $1\text{ppm}$ 이라고 할 경우내며 용질  $1\text{mg}$ 이 비중1인 용매  $1\ell$ 에 녹아있는 것을 말한다.

피피비는 parts per billion의 약칭으로 ppm의  $1/1,000$  즉 10억분의 1을 말한다.

### 협기성세균

산고가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는 세균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존이 곤란한 것과 산소가 있어도 생육할 수 있는 것이 있음. 전자는 메탄 세균, 황산염 환원 세균, 파상풍균 등이며, 후자는 젖산균, 대장균 등임.

### 호기성세균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의 총칭. 호기성 세균은 산소 분 압(혼합기체의 각 성분 기체가 전 용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의 압

력)이 높아질수록 활발히 활동한다. 포장재로 식품을 밀봉하는 것은 호기성 세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이다.

## 호소

내륙의 와지(窪地) 고여 있거나 완만하게 흐르는 수과. 일반적으로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호수, 소택지, 연못 등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소택지에는 관목·초본 등이 비교적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연못은 호수에 비해 크기가 작다.

## 화석연료

인류 탄생 이전 오랜 세월에 걸쳐 동식물의 유해가 축적되어 생성된 연료, 석유, 석탄, 천연 가스 등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오랫동안 자연계가 비축해 온 것을 수백 년 사이에 소모하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난화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의한 산성비 등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Chemical Oxygen Demand)

물속에 있는 유기성 오염물질이 산성상태에서 과망간산칼륨(KMnO<sub>4</sub>) 또는 중크롬산칼륨(K<sub>2</sub>Cr<sub>2</sub>O<sub>7</sub>)과 같은 산화제의 작용으로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하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며,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함께 유기성 오염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COD를 사용하고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

대기,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의 대상은 1)시단위 이상 지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호직역에 있는 3백 평 이상 일반업무시설 등 모두 7개 군이며 2)경유자동차 가운데 사업자, 법인 및 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지프,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이다.

## 환경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생존권으로서 기본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 환경난민(Environment Refugees)

자연재해나 지역개발 등으로 주거지역과 경작토지를 잃어버린 개발난민을 지칭하며, 매년 2천~3천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거대한 댐건설, 집단농장 조성등과 사막화현상 및 토양의 염기성화 현상등이 거론된다.

## 환경마크

일명 에코(ECO)마크라고도 하며, 자원의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붙여지는 마크제도인데, 상품의 원료가 천연자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물질등을 재활용해 원료로 쓰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의 상품에 부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EIA 과정은, (i) 제안된 조치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회피 혹은 완화할수 있는 대안들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고려토록 하고, (ii)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제안된 계획이나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음.

## 환경용량(Environment Capacity)

자연계의 대기, 물 토양은 상호작용을 하고 환경사이클을 형성하는데 여기에서 생물은 매개체로서 움직이며 일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화학적 분해작용과 상호간의 균형이 유지된다. 이와 같은 자연계는 물질을 환원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보존하고 또 자원을 재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양적으로 취한 것이 환경 용량이다. 이 환경용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다량의 오염물질이 자연계에 노출되면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환경사이클이 파괴된다.

## 환경의 날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제27회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전세계 1백 14개국 정부대표가 모여 지구 규모의 환경파괴에 대한 이 회의를 기념해 개회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는 날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중심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국민운동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환경의 유한성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면 환경용적을 초과하여 인류 및 생물의 생존이 위기에 봉착한다는 견해. 오염물질이 방출되어도 자연은 자정능력으로 이를 능력의 한계까지는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 넘으면 공해, 환경파괴로 표면화되고 여기에 더욱더 오염이 진행되면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로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된다. ‘환경의 유한성’은 ‘환경용적’과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의 학술용어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로서 사람·동물의 호르몬 움직임을 어지럽히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컫는 조어이다. 즉,

내분비계에 작용해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수컷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생식기능 이상을 초래하며 심지어는 수컷을 암컷으로 바꿔놓기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현재로선 내분비 교란물질의 종류와 생체내에 작용하는 메카니즘이 복잡해 원인규명과 퇴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황사현상(Sandy Dust Phenomena)

중국대륙의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등이 봄철 건기에 저기압대가 형성되면 0.25~0.5mm 크기의 모래먼지 입자가 상승기류를 타고 편서풍에 실려 한반도로 밀려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황사에는 각종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섞여 있어 눈병과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시정장애, 농작물 생육장애등을 유발한다. 최근에는 중국의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기중에 배출된 다량의 아황산가스와 중금속 등이 함께 실려와 한반도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환경파괴 위험이 심각하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고,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 시 태양광의 작용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PAN 등 광화학 산화성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의 총칭임.

고정배출원에서의 유기용제 사용과 액체연료의 사용, 수송, 저장 및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에서 사용되는 연료에 의해 대기중으로 배출됨. 또한 VOC는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매와 화학 및 제약공장 그리고 플라스틱의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 등까지 매우 다양하며, 저비점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유기물질들이 거의 VOC임.

### abs세제

음이온계 합성세제의 세정 성분 중 하나로 초기 합성세제의 주류를 차지

하였다. 분해성이 낮고 물오염 및 손이 거칠어지며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alkybenzene sulfonate의 약칭. 합성세제의 주류로서 가정 하수 중에 함유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독성물질이다. 하수 중에 0.5~1ppm이 함유되면 많은 거품을 발생케하여 세균의 작용을 방해, 배수처리상 장해가 된다.

## CFCs

Chlorofluorcarbons 즉, 염화불화탄소의 약자로 상품명 프레온가스로도 불린다. CFCssms 미국 듀폰사에 의해서 최초로 공업화되었는데, CFCs는 처음에 냉장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냉동기, 에어컨 등 여러 가지 냉동 조작에 없어서는 안될 매체로 발달해 왔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우레탄폼(스치로풀)의 발포제로서 쓰이기 시작하였고, 상온에서 액체인 CFC-113은 컴퓨터와 같은 정밀기계 세정용제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CFCs는 20세기에 태어난 최고의 발명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난분해성으로 성충권의 오존층을 소멸하고 있어, 심각한 물질로 지목되고 있다.

## FDA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란 미국 연방 식품국의 약자이다. 식품, 약품, 화장품에 근거해서 식품, 식품 첨가물, 약품화장품, 세제 등의 안전성, 유효성, 물질표시를 관리한다. 한편, 식품, 약품의 허용량,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에 서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NGO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국제기관. 보통 국제기구, 국제기관이라고 하면 국제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기관(IGO)을 말한다. 비정부기구(NGO)는 이에 대비되는 말로,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조직에 대해 유엔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 VDT증후군

페스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워크 스테이션 등 브라운관을 사용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VDT) 노동에 동반되는 건강 장애, 주요증상은 눈동자의 피로, 어깨결림, 손의 마비, 울렁거림, 불안, 우울증이 있다. 일주일에 20시간 VDT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약 60%가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WT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줄임말로서 세계보건기구라고 칭한다. 국제 연합 전문 기관의 하나로 1948년에 비준되어 발족했다. '모든 인민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도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종 전염병의 예방, 환경 위생, 방사선 위생 등에 대해 정보 교환, 연구 촉진, 기술원조 등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SS(Suspended Solid : 부유물질량)

현탁물질을 말하며, 시료를 여과시 여과에 의해 분리되는 유기 또는 무기 물의 고형물 입자

## TN(Total Nitrogen : 총 질소)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의 량

## TP(Total Phosphorus : 총 인)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인의 총량

## DO(Dissolved Oxygen : 용존산소량)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량

##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s : 폭기조내 혼합액 부유물질량)

활성오니법에서 폭기조내 혼합액의 평균 부유물질 농도

## 《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용어 》

바꿈대상 용어	바꿈 용어	비 고
강열감량	완전연소가능량	바꿈
포기(조)	공기공급(조)	바꿈
비산먼지	날림먼지	권장
자연취락지구	자연마을지구	바꿈
빈부수성수역	청정수역	바꿈
중부수성수역	보통수역, 일반수역	바꿈
오니, 슬럿지	찌꺼기	권장
슬러리	현탁액	권장
경구독성, 경피독성	섭취에 의한 독성, 피부를 통한 독성	권장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쓰레기, 버린 음식물	권장
어독성	어류독성	바꿈
중수도	재사용수도	병행
집진시설	먼지제거시설	권장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타는/안 타는 폐기물	권장
혐기성, 호기성	피산소성, 친산소성	권장
999천분위수, 99백분위수	전체 측정수를 1000(100)개로 환산하여 그 999(99)번째의 수	바꿈
ml, mℓ, mℓ(mg/ℓ, mg/L, mg/l)	mL(mg/L)	
ppm, ppb, ppt	$10^{-6}$ , $10^{-9}$ , $10^{-12}$	
Kg	kg	

기존 용어	바꿈 용어	기존 용어	바꿈 용어
가스	기체	공시험	바탕시험
내경	안지름	면적	넓이
배가스	배출가스	역가	농도계수
연도	굴뚝	용량, 용적	부피
유리봉	유리막대	질소봄베	질소통
천칭	저울	초자	유리기구
취기	냄새	탈기	기체제거
포집	채취	동	구리
연	납	망간	망가니즈
플루오르, 불소	플루오린	브론	붕소
브롬	브로민	세레늄, 셀렌	셀레늄
시안	사이아나이드	시안화수소	사이안화수소
안티몬	안티모니	염소이온	염소
크롬	크로뮴	6가크롬	크로뮴(6+)
나트로벤젠	나이트로벤젠	디메틸아민	다이메틸아민
다옥신	다이옥신	디클로로메탄 메틸렌클로라이드	염화메틸렌
디클로로벤젠	다이클로로벤젠	디클로로에탄	다이클로로에테인
염화비닐	클로로에틸렌	이황화메틸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
크실렌	자일렌	클로로포름	클로로폼
부탄	뷰테인	사이클로헥산	사이클로헥세인
스틸렌	스타이レン	포름알데히드	폼알데하이드
황화메틸	다이메틸 설파이드	n-헥산	노말-헥세인

## **2009년도 충북환경백서**

발 행 일 / 2010년 2월 10일

발 行 / 충청북도

편 집 / 환경정책과

인쇄 / 선광기획(254-8095)

본 환경백서에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360-765

충북도청 환경정책과

전화 : 043-220-4741~6

팩스 : 043-220-4749

